

상법(보험편)의 주요 개정 내용

2014년 2월 20일 국회는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보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보험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고(제638조의3),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646조의2),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였고(제662조), (4) 보험회사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제682조), (5) 보증보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제726조의5 내지 제726조의7), (6)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하며(제732조의2), (7)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제735조의3 제3항).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제638조의3)

현행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유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취소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동법 제638조의3을 신설하여 i)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ii)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제646조의2)

현행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646조의2를 신설하여, 1) 보험대리상(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2)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특정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개인 보험설계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는 한편, 3)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662조)

현행 소멸시효기간은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제682조)

제68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은 보험의 이익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함께 향유하는 주체로서, 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상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 보증보험 관련 규정 신설(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현재 보증보험의 근거규정이 없고,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해 그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를 신설하여, i)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 조항을 도입하고(제726조의5), ii) 상법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제726조의6), iii)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726조의7).

6.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자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현재 생명보험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제732조의2를 신설하여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7.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제735조의3 제3항 신설)

현재 단체보험은 성질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제735조의3 제3항을 신설하여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그 상속인을 포함)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세렬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20	E-Mail. srhong@shinkim.com
● 조 춘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13	E-Mail. ccho@shinkim.com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04	E-Mail. leesh@shinkim.com
● 장대건 변호사	TEL. 02 316 1740	E-Mail. dkjang@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